

유해물질의 허용기준(제5조 관련)

낚시도구별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.

낚시도구의 종류	유해물질명	용출 허용기준(mg/kg)
낚싯봉, 낚싯바늘, 낚시찌, 낚싯줄	납(Pb)	90 이하
	비소(As)	25 이하
	크로뮴(Cr)	60 이하
	카드뮴(Cd)	75 이하

비고

1. 낚싯바늘 및 낚시찌의 경우에는 금속재료를 추가한 경우에 한정한다.
2. 낚싯줄의 경우에는 주원료가 금속인 경우에 한정한다.
3. 삭제 <2016. 11. 22.>